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4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6年 11月 4日(月) 11時16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第4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變更의件
2. '96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
3. 武裝共匪浸透被害地域支援對策促求에關한建議案
4. 大關嶺觀光特區指定의變更을바라는建議案
5.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6.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7. 平昌郡污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關한條例案

- | | |
|---------------------------------------|-----|
| 1. 報告事項 | 2 面 |
| 2. 第4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變更의件(議長提議) | 2 面 |
| 3. '96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李慶鎮議員外6人) | 3 面 |
| 4. 武裝共匪浸透被害地域支援對策促求에關한建議案(禹康鎬議員外6人發議) | 5 面 |
| 5. 大關嶺觀光特區指定의變更을바라는建議案(禹康鎬議員外6人發議) | 5 面 |
| 6.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 7 面 |

- 7.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等改正條例案審議保留動議(禹康鎬議員發議) —9 면
- 8.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等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9 면
- 9. 平昌郡汚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關한條例案(平昌郡守提出) ————11 면

(11時16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평창군의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1時17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군정질문·답변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휴회중 의원님들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부득이 회기변경 여부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한 다음 나머지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第4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變更의件(議長提議)

(11時19分)

○ 議長 金樂雲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평창군의회의회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당초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부터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이 군정을 대표하여 의지있고, 책임있는 답변

을 하여야 할 평창군수가 국·도정 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질문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이번
에 실시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자 회기는 2일간 단축하여 10월 23일부
터 11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안건들을 오늘로
앞당겨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參 照 >

- 의사일정

(끝에 실음)

3. '96年度下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
認結果報告(李慶鎮議員外6人)

(11時21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96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

인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경진의원 나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鎮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
에서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활
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김낙운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중에서 현지 사업장 안
내를 위하여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
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23일 제44회 평창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의거 71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
인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0월 23일에 평창읍 문
화예술회관 신축 사업장을 시작으로 하
여 11월 1일 미탄면을 끝으로 계획된 사

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목표한대로 정상적인 사업공정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쓰레기매립장설치, 상수도시설 확장, 도읍정비 가꾸기 사업등의 경우 착공지연 또는 사업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편입대상지 조사 누락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가 하면, 총사업비 판단 착오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는등 사업시행전에 보다 세심한 사업검토가 요구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 설치 사업등 일부사업은 관련 부서간의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오수차집 관로의 미설치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였고, 수년간에 걸친 토석채취로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적절한 중간복구 조치가 이루어

어지지 않아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농민들의 소득기반 시설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시설 준공후 운영 관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집단마을조성, 다가구 주택건립등 각종 사업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오염문제등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해결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군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온 군민이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속에서 희망을 갖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주민을 최우선시 하는 위민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활동을 통하여 나

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보완 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 '96年度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書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경진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본 안건은 사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로 작성되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96년도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선 이번 의회의 현지확인결과 도출된 제반사항을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차질없는 행정추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9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4. 武裝共匪浸透被害地域支援對策促求에 관한建議案(禹康鎬議員外6人發議)
 - 5. 大關嶺觀光特區指定의變更을바라는建議案(禹康鎬議員外6人發議)
- (以上 2件 一括上程)

(11時25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장공비침투피해지역지원대책촉구에 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관령특구지정의변경을바라는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무장공비침투피해지역지원대책추구
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
비 침투와 10월 8일 오대산 국립공원 일
대의 무장공비 출몰로 인하여 군부대의
공비소탕 작전이 장기 국면으로 흐르게
되자, 이로 인한 군 관내 농업, 관광서
비스업등 전 분야에 걸친 인적·물적 피
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서 지역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생업활동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과 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
으로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관광특구지정의변경을바라
는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군이 천혜의 자연경관
이 수려한 오대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고원지역에 사계절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90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서
우리 군지역을 관광 산업지로 육성 발전
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수년전부터 군민들은 관광특구지정을 염
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30일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군의 도암면 일부지역과 강릉지역
을 단일권역으로 하는 대관령관광특구를
한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체육부의 특구지정계획은 평
창군 일부 지역에만 국한 됨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바라는
평창 군민들의 여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관령 특구지정은 대관령관광특
구의 명칭에 걸맞게 평창군 지역의 확대
지정을 바라는 건의서를 관계기관으로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 武裝共匪浸透被害地域支援對策促求에 關한 建議案
- 大關嶺觀光特區指定의 變更을 바라는 建議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강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무장공비침투피해 지역지원대책추구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관령관광특구 지정의 변경을 바라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 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1時3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姜慶錫 : 내무과장 강경석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전산화 계획과 관련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기구조정 및 인력보강과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 부서와 민원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른 관리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과에 전산업무 전담 계 신설과 관련하여 인력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등 3명이 순수 증원되는 것이며, 지적과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처리 인력 1인으로서 7급 순수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발언 하십시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이 10월 11일자로 저희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직제규칙이 평창군보에 12일자로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관한 내용은 익히 잘알고 계시겠지만 규칙은 조례의 상위법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비한 점도 있고, 절차상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의장님께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할 것을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7.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審議保留動議(禹康鎬議員發議)

(11時32分)

○ 議長 金樂雲 : 방금 우강호 의원으로부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우강호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우강호 의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

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과반수인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1時35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95년 8월25일자로 통합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소득지원금에 용자대상자 용자금으로 고소득을 올릴수 있거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층과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등 소득과 재산등 차이점이 많아 안정자금을 현 조례에 의하여 용자해 줄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 저리의 용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연체 이자율을 위탁금융기관에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현재 17~18%에 적용하던 것을 연8%로 이자율을 낮추었으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용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하던 것을 3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 하므로 부

담을 부담 시켰으며, 거치 기간동안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무이자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주민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활기반 조성을 촉진시키고자 생활안정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항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리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
금운용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平昌郡汚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關
한條例案(平昌郡守提出)

(11時39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7항 평창
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환경보호과장
조규식입니다.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조례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

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전문21조 부칙 3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오
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으로 인하여 주민보건 및 음용수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
위반행위자 과태료처분 및 분뇨관련영업
자의 청소기준등을 정하여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일관성 있
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
은 평창을 가꾸기 위한 것입니다.

이조례를 네가지로 구분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첫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기준을 규정하
여 미생물 활성화의 처리시설의 안정화
를 기하기 위하여 안제2조에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관련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부적정
정화조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
습니다.

둘째,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 내용을 제4조에 규정함으
로써 관련 업소의 적절한 업무처리를 기

하였으며, 셋째, 평창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정수조례중 분뇨 및 정화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수수료, 사용료수수료등을 동조례안에 일원화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민원발생의 원인을 일소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서 분뇨 및 정화조등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 관련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수수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넷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법 및 청문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 20조까지의 내용에 포함하여 적용 법규 일관성을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면, 입법예고를 '90년 3월11일 부터 3월31일까지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9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분군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정수조례및폐기물수집수수료등정수조례에관한

조례중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만 운영하여 오다가 금번 평창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 부과정수조례및폐기물수집수수료등정수조례를 폐지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분뇨 및 생활하수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하수,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여 음용수 및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參 照 >

- 平昌郡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세요.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수집수수료 요금표가 있는데, 1ℓ 당 기준이 운반요금, 처리요금을 포함해서 14원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기준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네, 그렇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앞으로 인상할 계획도 있습니까?

○ 環境보호과장 조규식 :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차후에 요인이 발생하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라든가, 운반 수수료는 전에 했던 요율하고 같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요율이 인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는데, 분뇨수거하는 회사가 평창군에 4개업체가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수거.....,

○ 禹康鎬 議員 : 태백산업공사하고, 평창공사하고, 2개업체만 해도 실질 다른 회사들이 끼지 않아도 인상될 부분을 미리 삭제해 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정집 치는데 8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네,

○ 禹康鎬 議員 : 그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수세식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분뇨수거료가 이렇게 작게 드는 편이 아

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인상이 억제되
지 않도록, 이것도 어찌면 주민생활 물
가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모든 일정
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96년도 계획된 사업추진의 마무
리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원만한 회
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진 집행

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보다 성숙된 내일
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한 뜻
깊은 회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정기회도 의원 여러분
의 실무연찬을 통하여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閉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鎮
議 員	劉 燾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副 郡 守	朴 容 康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劃監査室長	金 榮 柱
財 務 課 長	申 大 松
地域開發課長	宋 在 明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福 祉 課 長	朴 靜 子
環境保護課長	趙 圭 植
農 政 課 長	辛 永 善
商 工 課 長	金 昌 吉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建 設 課 長	洪 基 杓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姜 仁 洙
保健事業課長	孫 東 欽
社會指導課長	李 宇 炯
技術普及課長	韓 用 球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專 門 委 員	辛 敎 善
議 事 係 長	全 完 鐸
地方行政主事補	李 鎭 均

【 議 席 】

○ 議席表 (13面に 실음)

【 보 고 사 항 】

○ 의안접수

- 무장공비침투피해지역지원대책촉구에관한건의안
- 대관령관광특구지정의변경을바라는건의안
(이상2건 10월 31일 - 우강호의원 외6인 발의)
- '96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1월 2일 - 이경진의원외6인)

○ 민원접수

- 영동고속도륙4차선확·포장공사와 관련된 진정서
(10월28일 - 도암면 유천리 용지 편입대상농민의 모임대표 김원준 외25명)

○ 일반문서접수

- 장애인복지정책, 농산물 가격하락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서

<p>(10월24일 우강호 의원)</p> <p>○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발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행정주사보 변상득 → 강원도 전출(10월 31일자)	
--	--

의 사 일 정

제44회평창군의회(임시회)

'96. 10. 23-11. 4(13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23(수) 10:00	-	○ 개회식	
10:20	제 1 차 본 회 의	1. 제4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4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6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4.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휴회 : 10.24~ 11. 2(10일간)
13:00	-	○ 현지확인 활동(평창)	
10.24(목) 10:00	-	○ 현지확인 활동(도암)	
10.25(금) 10:00	-	○ 현지확인 활동(진부)	
10.26(토)	휴 회	○ 지역별 의정활동	
10.27(일)	휴 회	○ 일요일	
10.28(월) 10:00	-	○ 현지확인 활동(용평)	
10.29(화) 10:00	-	○ 현지확인 활동(봉평)	
10.30(수) 10:00	-	○ 현지확인 활동(대화)	
10.31(목) 10:00	-	○ 현지확인 활동(방림)	
11. 1(금) 10:00	-	○ 현지확인 활동(미탄)	
11. 2(토)	-	○ 현지확인 결과 종합	
11. 3(일)	휴 회	○ 일요일	
11. 4(월) 11:00	제 2 차 본 회 의	1. 제4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변경의건 2. '96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3. 무장공비침투피해지역지원대책추구에관한건의안 4. 대관령관광특구지정의변경을바라는건의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7. 평창군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6. 10. 11 평창군수(내무과장)
- 나. 회 부 일 자 : 1996. 10. 16
- 다. 상 정 일 자 : 1996. 11. 4 제4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전산화 계획과 관련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기구조정 및 인력보강과
-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와 민원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른 관리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내무과에 전산업무 전담계 신설과 관련한 인력 3인(6급1, 7급1, 8급1) 순수 증원(안 제2조제1호)
- 나. 지적과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처리 인력 1인(7급) 순수 증원 (안 제2조제1호)

4. 검토의견

강원도로부터 '96. 9. 6(자치12200-1237)일과 9. 13(자치12200-1279)일에 각각 승인이 된 사항이고, 지방 전산화 계획과 관련하여 주 전산기 도입에 따른 전산업무 전담계 신설 및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순수증원으로써, 현행 정보통신계를 전산정보계와 통신계로 분리하여 전산정보계에 순증 3명과 기존 2명의 전산직을 포함 총 5명이 배치되겠으며, 지적과에는 전산·건축 복수직렬로 1명의 정원이 순수하게 증원이 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인력을 조기에 확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임.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6. 9. 12 평창군수(복지과장)
- 나. 회 부 일 자 : 1996. 10. 16
- 다. 상 정 일 자 : 1996. 11. 4 제4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기반조성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생활안정자금의 연체이자는 연 8퍼센트로한다(안 제6조제2항)
- 나.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안 제6조제3항)

4. 검토의견

저소득주민들에게 장기저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연체이자는
시중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보다 낮게 적용하므로써, 자립의욕을 북돋우
기 위한 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은 되나, 자칫 상환능력부족으로 기금
결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자금 융자시 수익사업을 알선해 주
는 등 자립능력을 배양토록하여 융자금 상환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
를 기하여야 할 것임.

평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6. 10. 14 평창군수(환경보호과장)
- 나. 회 부 일 자 : 1996. 10. 16
- 다. 상 정 일 자 : 1996. 11. 4 제4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보건 및 음용수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위반행위자 과태료처분 및 분뇨관련 영업자의 청소기준 등을 정하여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일관성있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평창을 가꾸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 가.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기준(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계약(안 제5조)
- 다. 분뇨 및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청소수수료, 사용료징수 등(안 제6조, 제7조)
- 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안 제13 ~ 21조)

4. 검토의견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와 관련한 처리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의 내용으로 통합조정이 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련되는 사항은 변동이 없으나,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는 종전보다 다소 인상이 되는 내용임.

나.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승인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